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임차인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서울신내역 CITY PRADIUM 시티프라디움

THINK NEXT 시티건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 공급대상 : 85㎡ 이하 임대주택 495세대
■ 시행사 : ㈜시티해양건설
■ 시공사 : ㈜시티건설, ㈜시티종합건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본 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http://www.신내역시티프라디움.com)합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신내역시티프라디움.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정당계약 기간에는 당첨자(계약자)외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은 이 주택의 견본주택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 측정시 37.5도가 넘을 경우
■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전화(1644-5011/한국부동산원 1644-7745) 등을 통해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임대공급주체인 ㈜시티해양건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복 계약시 기존 주거주택의 퇴거요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차인모집공고일은 2020.12.29(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임차인모집공고일 2020.12.29(화) 현재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한하며 외국인 및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 자격요건에 부동산, 자동차 등 별도의 자산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년 :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자 중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고령자 :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 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2020.12.28(월)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특별공급 계약자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구비하여야 하고, 아울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3을 준용하여, 임대차계약갱신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및 소득자산요건, 청년, 고령자 특별공급의 연령 및 소득자산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를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본 주택의 견본주택 개관은 2020.12.30(수) 예정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됩니다.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신내역시티프라디움.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등 청약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일반공급, 특별공급의 임차인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 및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395세대)은 총 세대수(495세대)에서 특별공급(100세대) 세대를 제외한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은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 홈페이지(http://www.신내역시티프라디움.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는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본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특별공급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임차인 자격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 및 소득 요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및 소득 요건 - 고령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요건

I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0-주택과-38503(2020.12.28.)로 임차인모집공고 승인
■ 본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0.03.20.)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36,278.00㎡(공동주택 : 14,356.0000㎡) • 건축물 연면적 : 286,268.1360㎡(공동주택 : 86,297.6953㎡) • 지역 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 본 건축물은 양원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상복합용지입니다. • 본 사업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_반경200m이내)에 해당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4층~1층(주차장, 기계/전기실), 지하1층~1층(공동주택 부대시설), 지상2층~40층(공동주택) • 공급규모 : 지하 4층~지상40층, 12개동 중 공동주택 총 495세대(4개동)
• 주차대수 : 전체 2,234대(오피스텔 1,076대(장애인 33대 포함) / 공동주택 659대(장애인 20대 포함) / 판매,운동,근생시설 499대(장애인 16대, 조업10대 포함)
■ 내진설계 등급 :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S=0.22	Sc	1.2	C	I	R=4.0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등급 VII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168(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월 : 2023년 11월 예정 (준공 및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

전용면적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일반공급	계	입주예정
84㎡	84A	84.9809	28.9851	113.9660	60.5799	174.5459	29.0246	-	-	-	117	117	2023년 11월 중
	84B	84.9331	29.0021	113.9352	60.5458	174.4811	29.0082	-	-	-	88	88	
	84C	84.5792	28.7306	113.3098	60.2936	173.6034	28.8874	-	-	-	60	60	
	84D	84.9713	28.5642	113.5355	60.5731	174.1086	29.0213	-	-	-	32	32	
	84E	84.9435	28.8608	113.8043	60.5532	174.3575	29.0118	-	-	-	30	30	
	84F	84.9435	28.8608	113.8043	60.5532	174.3575	29.0118	-	-	-	27	27	
	84G	84.9991	28.6777	113.6768	60.5929	174.2697	29.0308	-	-	-	18	18	
	84H	84.9991	28.6777	113.6768	60.5929	174.2697	29.0308	-	-	-	15	15	
	84I	84.9500	30.5133	115.4633	60.5579	176.0212	29.0168	-	-	-	4	4	
	84J	84.9500	30.5133	115.4633	60.5579	176.0212	29.0168	-	-	-	4	4	
	84K	84.9809	28.9851	113.9660	60.5799	174.5459	29.0246	11	17	3	-	31	
	84L	84.9331	29.0021	113.9352	60.5458	174.4811	29.0082	2	2	1	-	5	
	84M	84.5792	28.7306	113.3098	60.2936	173.6034	28.8874	1	1	1	-	3	
	84N	84.9713	28.5642	113.5355	60.5731	174.1086	29.0213	2	4	1	-	7	
	84O	84.9435	28.8608	113.8043	60.5532	174.3575	29.0118	5	9	1	-	15	
	84P	84.9435	28.8608	113.8043	60.5532	174.3575	29.0118	6	11	1	-	18	
	84Q	84.9991	28.6777	113.6768	60.5929	174.2697	29.0308	3	5	1	-	9	
	84R	84.9991	28.6777	113.6768	60.5929	174.2697	29.0308	4	7	1	-	12	
합계								34	56	10	395	49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일반공급타입(84A/84B/84C/84D/84E/84F/84G/84H/84I/84J), 특별공급타입(84K/84L/84M/84N/84O/84P/84Q/84R)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시된 타입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84A, 84K는 설계도서상 84A / 84B, 84L은 설계도서상 84B / 84E, 84O는 설계도서상 84B-1 / 84F, 84P는 설계도서상 84B-2 / 84C, 84M은 설계도서상 84C / 84G, 84Q는 설계도서상 84C-1 / 84H, 84R은 설계도서상 84C-2 / 84D, 84N은 설계도서상 84D / 84I는 설계도서상 84P-1 / 84J는 설계도서상 84P-2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으로 표기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되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II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본 주택의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공급유형	타입	라인	층	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 1회차(10%) '21.05.21	2회차(10%) '21.11.22	3회차(10%) '22.05.23	4회차(10%) '22.11.21	5회차(9%) '23.04.21	잔금(41%) 입주시
일반공급	84A	101동 3호라인	9층	1	510,90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45,981,000	209,469,000
			10층	1	513,500,000	51,350,000	51,350,000	51,350,000	51,350,000	51,350,000	46,215,000	210,535,000
			11층	1	516,0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46,440,000	211,560,000
			12층	1	518,50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46,665,000	212,585,000
			13-14층	2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46,890,000	213,610,000
			15-18층	4	523,30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47,097,000	214,553,000
			19-22층	4	525,90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47,331,000	215,619,000
			23-30층	8	528,50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47,565,000	216,685,000
			31-33층	3	525,90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47,331,000	215,619,000
			34층	1	528,300,000	52,830,000	52,830,000	52,830,000	52,830,000	52,830,000	47,547,000	216,603,000
			35-37층	3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47,340,000	215,660,000
			38층	1	523,40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47,106,000	214,594,000
		102동 2호라인	10층	1	508,40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45,756,000	208,444,000
			11층	1	510,90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45,981,000	209,469,000
			12층	1	513,30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46,197,000	210,453,000
			13-14층	2	515,90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46,431,000	211,519,000
			15-18층	4	518,50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46,665,000	212,585,000
			19-22층	4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46,890,000	213,610,000
			23-30층	8	523,60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47,124,000	214,676,000
			31-33층	3	521,10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46,899,000	213,651,000
			34층	1	523,40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47,106,000	214,594,000
			35-37층	3	520,90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46,881,000	213,569,000
			38층	1	518,300,000	51,830,000	51,830,000	51,830,000	51,830,000	51,830,000	46,647,000	212,503,000
		103동 2호라인	10-11층	2	508,40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45,756,000	208,444,000
			12층	1	510,800,000	51,080,000	51,080,000	51,080,000	51,080,000	51,080,000	45,972,000	209,428,000
			13-14층	2	513,30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46,197,000	210,453,000
			15-16층	2	515,90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46,431,000	211,519,000
			17-20층	4	518,50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46,665,000	212,585,000
			21-22층	2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46,890,000	213,610,000
			23-32층	10	523,60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47,124,000	214,676,000
			33층	1	521,10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46,899,000	213,651,000
			34층	1	523,40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47,106,000	214,594,000
			35-36층	2	523,40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47,106,000	214,594,000
			37층	1	520,90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46,881,000	213,569,000
			38층	1	518,300,000	51,830,000	51,830,000	51,830,000	51,830,000	51,830,000	46,647,000	212,503,000
		104동 2호라인	10-11층	2	510,90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45,981,000	209,469,000
			12층	1	513,30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46,197,000	210,453,000
			13-14층	2	515,90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46,431,000	211,519,000
			15-16층	2	518,50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46,665,000	212,585,000
			17-20층	4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46,890,000	213,610,000
			21-22층	2	523,30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47,097,000	214,553,000
			23-32층	10	525,90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47,331,000	215,619,000
			33층	1	523,60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47,124,000	214,676,000
			34-36층	3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47,340,000	215,660,000
			37층	1	523,40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47,106,000	214,594,000
			38층	1	520,90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46,881,000	213,569,000
	84B	101동 1호라인	21-22층	2	520,60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46,854,000	213,446,000
			23-26층	4	523,0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47,070,000	214,430,000
			27-30층	4	528,20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47,538,000	216,562,000
			31-33층	3	525,60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47,304,000	215,496,000
			34층	1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47,520,000	216,480,000
			35층	1	525,70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47,313,000	215,537,000
			36층	1	523,20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47,088,000	214,512,000
		101동 5호라인	21-22층	2	525,60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47,304,000	215,496,000
			23-30층	8	528,20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47,538,000	216,562,000
			31-33층	3	525,60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47,304,000	215,496,000
			34층	1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47,520,000	216,480,000
			35-38층	4	525,70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47,313,000	215,537,000
		102동 3호라인	21-22층	2	523,0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47,070,000	214,430,000
			23-30층	8	525,60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47,304,000	215,496,000
			31-33층	3	523,30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47,097,000	214,553,000
			34층	1	525,70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47,313,000	215,537,000
			35-38층	4	523,20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47,088,000	214,512,000
		103동 3호라인	21-22층	2	523,0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47,070,000	214,430,000
			23-32층	10	525,60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47,304,000	215,496,000
			33층	1	523,30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47,097,000	214,553,000
			34-36층	3	525,70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47,313,000	215,537,000
			37-38층	2	523,20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47,088,000	214,512,000
		104동 3호라인	21-22층	2	525,60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47,304,000	215,496,000
			23-32층	10	528,20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47,538,000	216,562,000
			33층	1	525,60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47,304,000	215,496,000
			34-36층	3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47,520,000	216,480,000
			37-38층	2	525,70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47,313,000	215,537,000
	84C	102동 1호라인	21-22층	2	516,100,000	51,610,000	51,610,000	51,610,000	51,610,000	51,610,000	46,449,000	211,601,000
			23-26층	4	518,50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46,665,000	212,585,000
			27-30층	4	523,40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47,106,000	214,594,000
			31-33층	3	521,10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46,899,000	213,651,000
			34층	1	523,50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47,115,000	214,635,000
			35-39층	5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46,890,000	213,610,000
			40층	1	518,50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46,665,000	212,585,000
		103동 1호라인	21-22층	2	513,60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46,224,000	210,576,000
			23-28층	6	516,0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46,440,000	211,560,000
			29-32층	4	521,10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46,899,000	213,651,000
			33층	1	518,60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46,674,000	212,626,000
			34-36층	3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46,890,000	213,610,000
			37-39층	3	518,50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46,665,000	212,585,000
			40층	1	515,90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46,431,000	211,519,000
		104동 1호라인	21-22층	2	516,100,000	51,610,000	51,610,000	51,610,000	51,610,000	51,610,000	46,449,000	211,601,000
			23-28층	6	518,50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46,665,000	212,585,000
			29-32층	4	523,40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47,106,000	214,594,000
			33층	1	521,10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46,899,000	213,651,000
			34-36층	3	523,50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47,115,000	214,635,000
			37-39층	3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46,890,000	213,610,000
			40층	1	518,50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46,665,000	212,585,000
	84D	101동2호라인	9층	1	505,700,000	50,570,000	50,570,000	50,570,000	50,570,000	50,570,000	45,513,000	207,337,000
			10층	1	508,30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45,747,000	208,403,000
			11층	1	510,90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45,981,000	209,469,000
			12층	1	513,30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46,197,000	210,453,000
			13-14층	2	515,80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46,422,000	211,478,000
			15-18층	4	518,40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46,656,000	212,544,000
			19-22층	4	520,90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46,881,000	213,569,000
			23-26층	4	523,50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47,115,000	214,635,000
			27-30층	4	525,90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47,331,000	215,619,000
			31-33층	3	523,50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47,115,000	214,635,000
			34층	1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47,340,000	215,660,000
			35-39층	5	523,40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52,340,000	47,106,000	214,594,000
			40층	1	520,80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46,872,000	213,528,000
	84E	101동 1호라인	10층	1	508,10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45,729,000	208,321,000
			12층	1	513,30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46,197,000	210,453,000
			14층	1	515,80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46,422,000	211,478,000
			16-18층	2	518,40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46,656,000	212,544,000
			20층	1	520,70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46,863,000	213,487,000
		101동 5호라인	10층	1	513,30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46,197,000	210,453,000
			12층	1	518,20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46,638,000	212,462,000
			14층	1	520,80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46,872,000	213,528,000
			16-18층	2	523,10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47,079,000	214,471,000
			20층	1	525,70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47,313,000	215,537,000
		102동 3호라인	10층	1	510,70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45,963,000	209,387,000
			12층	1	515,70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46,413,000	211,437,000
			14층	1	518,20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46,638,000	212,462,000
			16-18층	2	520,80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46,872,000	213,528,000
			20층	1	523,10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47,079,000	214,471,000
		103동 3호라인	10층	1	510,70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45,963,000	209,387,000
			12층	1	513,100,000	51,310,000	51,310,000	51,310,000	51,310,000	51,310,000	46,179,000	210,371,000
			14층	1	515,70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46,413,000	211,437,000
			16층	1	518,20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46,638,000	212,462,000
			18-20층	2	520,80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46,872,000	213,528,000
		104동 3호라인	10층	1	513,30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46,197,000	210,453,000
			12층	1	515,70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46,413,000	211,437,000
			14층	1	518,20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46,638,000	212,462,000
			16층	1	520,80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46,872,000	213,528,000
			18-20층	2	523,10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47,079,000	214,471,000
	84F	101동 1호라인	9층	1	505,50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45,495,000	207,255,000
			11층	1	510,70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45,963,000	209,387,000
			13층	1	515,80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46,422,000	211,478,000
			15-17층	2	518,40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46,656,000	212,544,000
			19층	1	520,70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46,863,000	213,487,000
		101동 5호라인	9층	1	510,70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45,963,000	209,387,000
			11층	1	515,80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46,422,000	211,478,000
			13층	1	520,80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46,872,000	213,528,000
			15-17층	2	523,10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47,079,000	214,471,000
			19층	1	525,70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52,570,000	47,313,000	215,537,000
		102동 3호라인	11층	1	513,30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46,197,000	210,453,000
			13층	1	518,20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46,638,000	212,462,000
			15-17층	2	520,80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46,872,000	213,528,000
			19층	1	523,10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47,079,000	214,471,000
		103동 3호라인	11층	1	510,70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45,963,000	209,387,000
			13층	1	515,70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46,413,000	211,437,000
			15층	1	518,20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46,638,000	212,462,000
			17-19층	2	520,80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46,872,000	213,528,000
		104동 3호라인	11층	1	513,30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46,197,000	210,453,000
			13층	1	518,20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51,820,000	46,638,000	212,462,000
			15층	1	520,80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46,872,000	213,528,000
			17-19층	2	523,10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47,079,000	214,471,000
	84G	102동 1호라인	10층	1	505,900,000	50,590,000	50,590,000	50,590,000	50,590,000	50,590,000	45,531,000	207,419,000
			12층	1	511,10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45,999,000	209,551,000
			14층	1	513,60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46,224,000	210,576,000
			16~18층	2	516,20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46,458,000	211,642,000
			20층	1	518,70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46,683,000	212,667,000
		103동 1호라인	10층	1	503,40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45,306,000	206,394,000
			12층	1	506,0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45,540,000	207,460,000
			14층	1	508,500,000	50,850,000	50,850,000	50,850,000	50,850,000	50,850,000	45,765,000	208,485,000
			16층	1	511,10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45,999,000	209,551,000
			18~20층	2	513,60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46,224,000	210,576,000
		104동 1호라인	10층	1	505,900,000	50,590,000	50,590,000	50,590,000	50,590,000	50,590,000	45,531,000	207,419,000
			12층	1	508,500,000	50,850,000	50,850,000	50,850,000	50,850,000	50,850,000	45,765,000	208,485,000
			14층	1	511,10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45,999,000	209,551,000
			16층	1	513,60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46,224,000	210,576,000
			18~20층	2	516,20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46,458,000	211,642,000
	84H	102동1호라인	11층	1	508,40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45,756,000	208,444,000
			13층	1	513,60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46,224,000	210,576,000
			15~17층	2	516,20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46,458,000	211,642,000
			19층	1	518,70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46,683,000	212,667,000
		103동1호라인	11층	1	503,40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45,306,000	206,394,000
			13층	1	508,500,000	50,850,000	50,850,000	50,850,000	50,850,000	50,850,000	45,765,000	208,485,000
			15층	1	511,10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45,999,000	209,551,000
			17~19층	2	513,60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46,224,000	210,576,000
		104동1호라인	11층	1	505,900,000	50,590,000	50,590,000	50,590,000	50,590,000	50,590,000	45,531,000	207,419,000
			13층	1	511,10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45,999,000	209,551,000
			15층	1	513,60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46,224,000	210,576,000
			17~19층	2	516,20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46,458,000	211,642,000
	84I	101동5호라인 104동3호라인	39층	2	535,900,000	53,590,000	53,590,000	53,590,000	53,590,000	53,590,000	48,231,000	219,719,000
		102, 103동 3호라인	39층	2	533,300,000	53,330,000	53,330,000	53,330,000	53,330,000	53,330,000	47,997,000	218,653,000
	84J	101동5호라인 104동3호라인	40층	2	530,70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47,763,000	217,587,000
		102, 103동 3호라인	40층	2	528,10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47,529,000	216,521,000
특별공급	84K	101동3호라인	2층	1	448,100,000	44,810,000	44,810,000	44,810,000	44,810,000	44,810,000	40,329,000	183,721,000
			3~4층	2	450,30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0,527,000	184,623,000
			5~6층	2	452,40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0,716,000	185,484,000
			7층	1	454,70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0,923,000	186,427,000
			8층	1	457,100,000	45,710,000	45,710,000	45,710,000	45,710,000	45,710,000	41,139,000	187,411,000
		102동2호라인	2층	1	443,50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39,915,000	181,835,000
			3~4층	2	445,80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0,122,000	182,778,000
			5~6층	2	447,90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0,311,000	183,639,000
			7층	1	450,20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0,518,000	184,582,000
			8~9층	2	452,50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0,725,000	185,525,000
		103동2호라인	2층	1	438,90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39,501,000	179,949,000
			3~4층	2	443,50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39,915,000	181,835,000
			5~7층	3	447,90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0,311,000	183,639,000
			8층	1	450,20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0,518,000	184,582,000
			9층	1	452,50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0,725,000	185,525,000
		104동2호라인	2층	1	441,20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39,708,000	180,892,000
			3~4층	2	445,80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0,122,000	182,778,000
			5~7층	3	450,20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0,518,000	184,582,000
			8층	1	452,50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0,725,000	185,525,000
			9층	1	454,80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0,932,000	186,468,000
	84L	101동1호라인 104동3호라인	2층	2	443,20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39,888,000	181,712,000
		101동5호라인	2층	1	447,800,000	44,780,000	44,780,000	44,780,000	44,780,000	44,780,000	40,302,000	183,598,000
		102동3호라인	2층	1	445,50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0,095,000	182,655,000
		103동3호라인	2층	1	440,900,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39,681,000	180,769,000
	84M	102동1호라인	2층	1	439,10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39,519,000	180,031,000
		103동1호라인	2층	1	432,30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38,907,000	177,243,000
		104동1호라인	2층	1	434,500,000	43,450,000	43,450,000	43,450,000	43,450,000	43,450,000	39,105,000	178,145,000
	84N	101동2호라인	2층	1	443,40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39,906,000	181,794,000
			3~4층	2	445,700,000	44,570,000	44,570,000	44,570,000	44,570,000	44,570,000	40,113,000	182,737,000
			5~6층	2	447,90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0,311,000	183,639,000
			7층	1	450,20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0,518,000	184,582,000
			8층	1	452,50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0,725,000	185,525,000
	84O	101동1호라인	4층	1	445,50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0,095,000	182,655,000
			6층	1	447,90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0,311,000	183,639,000
			8층	1	452,30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0,707,000	185,443,000
		101동5호라인	4층	1	450,20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0,518,000	184,582,000
			6층	1	452,30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0,707,000	185,443,000
			8층	1	456,90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1,121,000	187,329,000
		102동3호라인	4층	1	447,90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0,311,000	183,639,000
			6층	1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0,500,000	184,500,000
			8층	1	454,60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0,914,000	186,386,000
		103동3호라인	4층	1	445,600,000	44,560,000	44,560,000	44,560,000	44,560,000	44,560,000	40,104,000	182,696,000
			6층	1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0,500,000	184,500,000
			8층	1	452,30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0,707,000	185,443,000
		104동3호라인	4층	1	447,90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0,311,000	183,639,000
			6층	1	452,30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0,707,000	185,443,000
			8층	1	454,60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0,914,000	186,386,000
	84P	101동1호라인	3층	1	445,50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0,095,000	182,655,000
			5층	1	447,90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0,311,000	183,639,000
			7층	1	450,20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0,518,000	184,582,000
		101동5호라인	3층	1	450,20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0,518,000	184,582,000
			5층	1	452,30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0,707,000	185,443,000
			7층	1	454,60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0,914,000	186,386,000
		102동3호라인	3층	1	447,90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0,311,000	183,639,000
			5층	1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0,500,000	184,500,000
			7층	1	452,30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0,707,000	185,443,000
			9층	1	454,60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0,914,000	186,386,000
		103동3호라인	3층	1	445,600,000	44,560,000	44,560,000	44,560,000	44,560,000	44,560,000	40,104,000	182,696,000
			5~7층	2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0,500,000	184,500,000
			9층	1	454,60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0,914,000	186,386,000
		104동3호라인	3층	1	447,90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0,311,000	183,639,000
			5~7층	2	452,30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5,230,000	40,707,000	185,443,000
			9층	1	456,90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1,121,000	187,329,000
	84Q	102동1호라인	4층	1	443,50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39,915,000	181,835,000
			6층	1	445,90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0,131,000	182,819,000
			8층	1	450,30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0,527,000	184,623,000
		103동1호라인	4층	1	438,90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39,501,000	179,949,000
			6층	1	443,60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39,924,000	181,876,000
			8층	1	445,700,000	44,570,000	44,570,000	44,570,000	44,570,000	44,570,000	40,113,000	182,737,000
		104동1호라인	4층	1	441,20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39,708,000	180,892,000
			6층	1	445,90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0,131,000	182,819,000
			8층	1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0,320,000	183,680,000
	84R	102동1호라인	3층	1	443,50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39,915,000	181,835,000
			5층	1	445,90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0,131,000	182,819,000
			7층	1	448,200,000	44,820,000	44,820,000	44,820,000	44,820,000	44,820,000	40,338,000	183,762,000
			9층	1	450,30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0,527,000	184,623,000
		103동1호라인	3층	1	438,90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39,501,000	179,949,000
			5~7층	2	443,60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39,924,000	181,876,000
			9층	1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0,320,000	183,680,000
		104동1호라인	3층	1	441,20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39,708,000	180,892,000
			5~7층	2	445,90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4,590,000	40,131,000	182,819,000
			9층	1	450,30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0,527,000	184,623,000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는 공휴일로 인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으로 하며, 잔금 및 일체의 납부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행자의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2년 단위 계약갱신에 2년간의 상승률(인상분)은 계약갱신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이 있으므로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 등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임대보증금액은 타입별, 층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임대보증금액은 홈페이지 임차인모집공고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선발인원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34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0.12.29(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 형제 및 자매는 제외)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자산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 1순위 : 소득자산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 소득자산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 소득자산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에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56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0.12.29(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고령자	10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0.12.29(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만 65세 이상인 사람(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시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명 중 계약자 1명을 정하여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2020.12.29(화))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공급 항목별(청년, 신혼, 고령자)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소득 기준 산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2,645,147원	4,379,809원	5,626,897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110% 이하	2,909,662원	4,817,790원	6,189,587원	6,848,976원	7,632,189원	8,353,491원	9,074,793원	9,796,095원
120% 이하	3,174,176원	5,255,771원	6,752,276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임차인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당첨자를 선정 및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타 모집분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일반공급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0.12.29(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여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0.12.29(화))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당첨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임차인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에 방식으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예비임차인 계약 이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특별공급 일반공급	1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은 되지 않으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고령자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청년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그 밖의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IV 공급일정 및 장소

■ 청약접수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특별공급 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2021.01.04.(월)~01.05(화) 08:00 ~ 17:30	인터넷 청약만 가능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 이체가능 금액 확인 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일시 : 2021.01.08(금) : 16:00
일반공급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이용대상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택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공급유형/특별공급 선택 → 청약자격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홈 인터넷 청약접수 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 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장소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1.01.08(금) 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청약홈(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V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1.01.14(목) ~ 2021.01.22(금) 10:00 ~ 17:00	• 제출방법 : 등기우편접수 • 제출장소 : 당사 견본주택(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0)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1.25(월) ~ 2021.01.29(금)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0)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임차인 자격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 및 소득 요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및 소득 요건 - 고령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요건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공급 유형별	공통서류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청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
		○		부모의 소득 관련서류	직계존속	•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경우	○		결혼 확인 서류	본인	•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예비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예비배우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예비배우자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고령자	○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0.12.29(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 비치)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입증서류 필요	• 접수장소

• 사업주체에서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발행한 소득증명서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국민은행	978237-01-009523	㈜무궁화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4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4-10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I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통지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방문은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 본 표시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관계자(자금관리신탁사 : ㈜무궁화신탁, 시행자 : ㈜시티해양건설)간에 자금관리업무 대리사무 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 분양하는 건물로서 본 사업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나, 시행자의 사업부지 확보와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관계자 간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지정된 분양대금 입금계좌로만 입금되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입금한 금원은 정당한 분양대금의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궁화신탁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만을 담당하며, 시행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무궁화신탁이 본 사업의 자금관리(분양수입금 수납 및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시행자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 액보다 작을 경우,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충당) 의무는 시행자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하며 ㈜무궁화신탁에게 민 ·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에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대출금융기관의 담보(근저당 또는 담보신탁)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무궁화신탁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시행자의 책임으로 이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 ㈜무궁화신탁은 분양계약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및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대출기관 : 추후별도 고지 예정(중도금 대출기관은 시행사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금리 및 금융기관 선정 등 대출기관 선정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 : 최초 임대보증금의 최대 49% 범위 내에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를 알선할 계획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의 49%(중도금) 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의 중도금 이자비용 대납은 계약자가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금 자납 또는 타 금융기관 대출납부로 발생하는 계약자의 금융비용 등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지정 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 할 경우 계약자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자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대출 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가 판단하여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 중도금 대출은 본 주택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될 경우 무효로 하고 해제(해지)일 즉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액을 변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등) 납부에 대하여 분양사업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납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금융시장의 경제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자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 당첨 · 입주 · 관리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이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셔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관리비, 입주 감소 등 제반비용이 부과됩니다. • 잔금 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이사 기간 또는 입주대상 종료 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물품 등 정산 후 1개월 내 반환 예정입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재된 시설물의 수선유지 의무와 관련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에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현재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시설, 난간의 디테일, 환기용창 등) 등의 외관 관련 사항이 사업계획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민은 주거시설 이외 부분에 대하여 일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신규 도로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호수별·층·호수별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지와 같이 본 공동주택, 관련 등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 시설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의 타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공종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 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의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 잔금을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사업주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2에 따라 해당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본 사업부지는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권·조망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주변시설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및 각종 편의시설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에서 계획 및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및 향후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변경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광역교통망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지연,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등)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등 관련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개발로 인하여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 계획이 있는 행정기관 등의 위치 및 이전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시기 등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서측에 36.5m도로, 남측에 16m도로와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동측으로 검토 중인 신내역사 입체적 연결통로 설치는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남측에는 자족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높이 등 설계 및 배치가 미정인 관계로 향후 인접 동들이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주거복합신축공사"는 도시철도 6호선 차량기지와 인접되어 있어 차량기지 특성상 24시간 열차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해서는 서울시(서울교통공사 포함) 및 시행자, 시공자에 어떠한 민원 및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에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가 인접되어 있어 재활용선별센터 특성상 운반차량(1일 통행횟수 약 526회)으로 인한 소음 ·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황
• 명칭 : 중랑자원재활용센터 • 소재지 : 용마산로 136길 205(망우동) • 면적 : 부지면적 5,590㎡ • 역할 : 재활용품 선별, 생활쓰레기 압출,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 스티로폼 감용 등 • 기타 :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등 적재 차량 수시 출입

• 본 사업부지 서측에 위치한 버스승차장 위치 및 개소는 설계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이전 견본주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생은 본 택지지구 내 신설예정인 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2022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 초등학교 개교예정일은 각종 심의결과 및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택지개발지구의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거 학년 내 학교에 따른 추첨방식 중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설비 및 시스템
• 난방은 지역난방 열교환기에 의한 바닥난방이 적용됩니다. • 각 세대에 냉방기기용 매립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냉방기기는 별도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천정형 전열교환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열교환기 및 연결 덕트가 천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건물은 부지 내에 판매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생활위로 인한 외부인과의 동선, 소음, 야간조명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난방의 경우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냉방의 경우 시스템에어컨 선택품목이 불가하여 냉방기기용 매립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BI, 경관조명, 태양광집열판 등이 설치될 수 있어 하층 세대 및 인근 세대의 조망, 일조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옥상구조물 등 설치된 관리·유지 등이 관리하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추후 색채 및 경관조명은 도시 미관 등 관련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벽에 설치될 아파트 명칭 및 동표시(색채 및 디자인 등)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위치, 색상,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복합시설의 주요용도는 주거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상호간 간섭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과 관련된 영업행위로 인하여 불편 등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주차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변도로에서 연결된 출입구를 통하여 주거와 비주거의 구분된 통로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 주출입구(진출입 차로 구분됨) 차로폭(면석제외)은 10.0M(진입 1차선, 진출 2차선 총 3차선)이고, 지하주차장 차로폭은 6.5M~7.0M입니다. 지하주차장 1층 유효높이 2.7m, 지하주차장 2,3,4층 유효높이 2.3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택배차량 등 일부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각 층 지하1층~지하3층은 모두 주동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나 지하4층은 103동, 104동만 주동 진출입이 가능하니,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해 현재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는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 주차 사용 시 각 층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동측으로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의 내부 장비 및 집기 일체는 제공되지 않으며, 설치시 입주자가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상업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일부 아파트의 경우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 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층 건물임을 감안하여 풍동실험 및 풍압테스트 등을 거쳐 설계되어,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소음 및 강한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출입구 및 도로 등은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합니다. • 건물 하부에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여 이용자들에 의해 소음 및 통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마감의 경우(지상 2~40층) 서울시 우수디자인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되며, 디자인 설계변경에 따라 색상 및 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중앙광장은 입주자 및 외부 주민 이용 가능한 공공통과 공간입니다. • 오피스텔 201,202,203,206,207,208동 사이 하부공간에는 하부층 판매시설의 냉각탑/배기팬 등 필수설비가 설치될 예정으로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부마감의 경우(지상 2~40층) 서울시 우수디자인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되며, 디자인 설계변경에 따라 색상 및 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중앙광장은 24시간 개방형 통로로 입주자 외 일반인의 통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부 지하1층~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입점하는 시설과 이용객들에 의해 주변 시설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면특화계획에 따른 구조물설치로 일부 세대 조망 및 일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연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며,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의 주상복합시설로서 동간거리가 적어 상호간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공조실, 냉각탑, 냉동기 등의 위치에 따라 일부 호실은 소음, 냄새 및 진동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는 저수조 및 하부 각 실의 주방, 욕실 배기를 위한 무동력 휀, 태양광 패널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하여 미관저해, 소음, 진동, 수증기,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건물 최고층 옥상 내 작전보완시설, 옥상 관측소 운영에 따른 군 관계자의 출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건물 색채,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본 건축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사유로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 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시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 변경이 필요시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관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84B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도면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 실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실 시공 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및 홈페이지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으며, 추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 점검구, 통신함, 분전반 등은 실제 시공 시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시공 시 등기구의 색온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 및 분양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미설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포장,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냉각탑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분양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평면, 시설물 마감재 등을 촬영, 보전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조경도, 단지모형, 각 타입 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건축허가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 및 설비기기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견본주택의 연출용 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계약자 참고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폴리싱타일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 및 가구형태 등은 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형세대 마감자재, 가구 및 제공품목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관련
• 당사가 안내하는 아파트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보조주방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 확인 필요)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환기설비가 적용될 예정이며 환기방식은 각종 인증, 설계변경,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및 가전은 제품수급상황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 증 금 액	보증서 번호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 147,857,894,000원	제 01282020-704-0090000호

■ 임대보증금보증약관 주요내용
• 이하의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이하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급되는 보증서 및 보증약관 내용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고지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회사가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제, 해지 등 종료되어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 주택임대보증금 이외의 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전에 입주한 보증채권자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보증채권자가 보증회사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가전제품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보증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다목적실,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VAT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건축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 4,628,753,800	114-81-19428
소방	㈜삼진탑테크엔지니어링	₩ 149,000,000	215-81-88868
전기	유원이앤에프(주)	₩ 1,941,108,666	134-81-25088
통신	㈜삼진탑테크엔지니어링	₩ 500,000,000	215-81-88868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시행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시티해양건설	㈜시티건설	㈜시티종합건설	㈜엔티파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203-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4, 10층(청담동, 삼강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3069930	법인등록번호 110111-4888834	법인등록번호 200111-0042295	법인등록번호 110111-1257165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홈페이지) : www.신내역시티프라디움.com ■ 분양문의 : 1644-5011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총 495세대 1644-5011

시행 CITY 해양건설 시공 CITY 건설 CITY 종합건설